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발간등록번호 31-9735026-001271-14
www.nars.go.kr

지표로 보는 이슈
제133호 2019년 3월 11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배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증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번의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음
-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동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 동 제도 도입 이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모두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도 상당히 큰 편임(2017년 실적 기준, 1조 8천억원)
- 1~10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 1분위와 5분위 집단 간의 공제액 차이는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또한 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축소하겠다는 반응은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소득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남
- 2010년 신용카드 이외의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그 외 결제수단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시사점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 활성화·보편화로 인해 동 제도로 인한 소득세 감면 규모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공제혜택의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공제혜택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영업자에 비하여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축소·폐지 시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설정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차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작은 체크카드·직불카드·제로페이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저소득층·고연령층 등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제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박 인 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보)
02-788-4578, inhwanis@assembly.go.kr

동 제도의 조세지출 현황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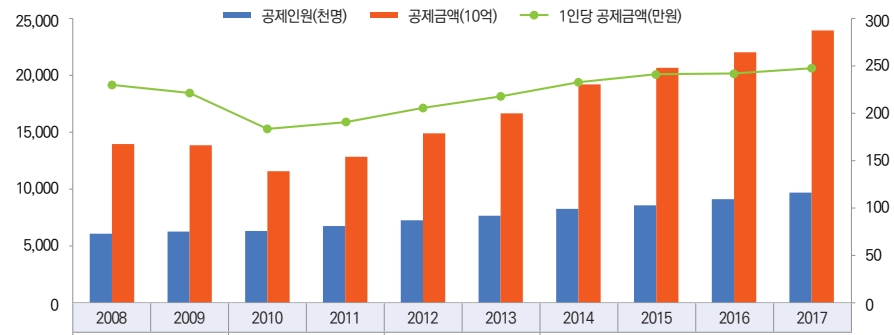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제율	20%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등: 25%		신:20% 직:30%		신:15%, 직:30%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의 20%		25%							
공제한도액	Min(500만원, 총급여액의 20%)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α(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고소득자 한도 신설	

자료: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최근 10년간 동 제도의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0%→25%)이 상향되고, 공제한도액(5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이 작아진 2010년에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고, 그 이후에는 공제 인원, 공제 금액 및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동 제도에 따른 조세감면액이 1조 8,500억원(2017년 실적 기준) 규모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감면액 상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큼(전체 국세감면액 중 5.0% 차지)
  - 더욱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에 2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재정패널[1]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별[2] 소득공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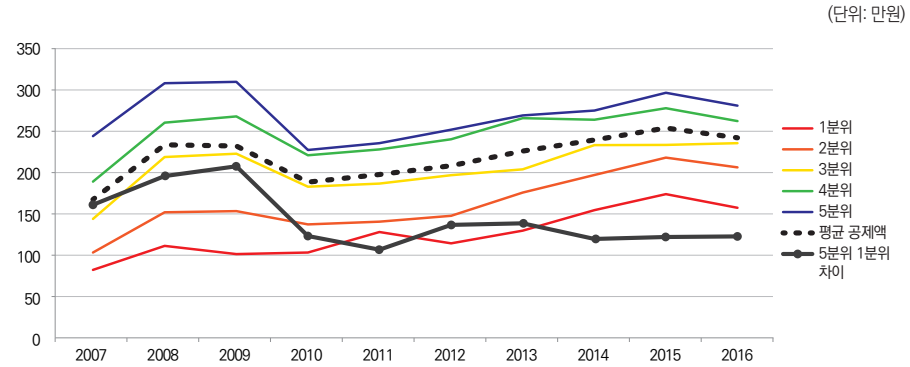

주: 1. '재정패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약 5,000개 가구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지출·조세인식 등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패널조사로서, 설문응답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수집하여 비교적 정확한 소득 및 과세자료 수집이 가능함. 2019년 2월 현재, 조사대상연도를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음

2. '소득분위'란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순서에 따라 동일규모의 집단으로 묶어 집단별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 본 자료는 5개 분위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였음(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배우자 및 부모 등의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어, 연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의 가구원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5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대폭 축소·변경된 2010년 이후 모든 소득분위 집단에서 공제액이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집단 간의 공제액 차이는 2010년 이후 크게 변동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제도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불균형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017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액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감면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계속하여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높아져 동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가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도 축소 및 폐지 논의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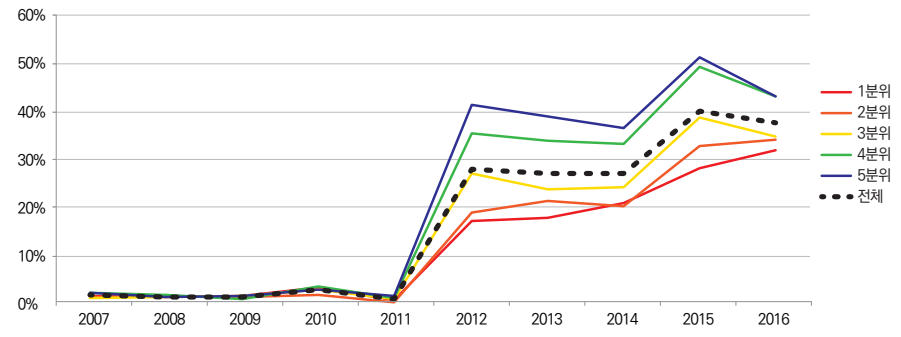

주: "향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귀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임
자료: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결제수단별 사용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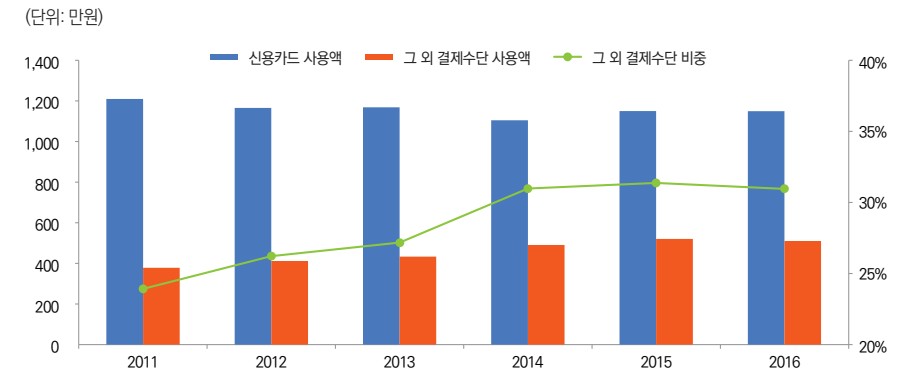

주: '그 외 결제수단 비중'이란 연도별 분석대상의 소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의 비중임. 재정패널의 2007년~2010년 자료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액만 구분되어 조사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7%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함(2016년 기준). 고소득집단(4·5분위)이 저소득집단(1·2분위)에 비해 제도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폐지 혹은 일몰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경인데, 2012년을 기점으로 동 제도가 축소 혹은 폐지될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줄이겠다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표현된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축소 의사가 실제 소비활동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임. 다만 근로소득자 상당수(55.5%, 2016년 재정패널 자료 기준)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고, 동 제도의 축소·폐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표 양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동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동일하였으나, 2010년부터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이후 그 폭도 계속하여 늘려 왔음.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신용카드가 아닌 그 외의 결제수단의 사용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부터는 신용카드(15%) 및 그 외 결제수단(30%)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가 유지됨에 따라,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의 사용량 및 그 비중 역시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자는 신용거래 및 할인·마일리지 적립·할부 거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맹수수료·신용불량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높음.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설정한 이후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축소를 포함하여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차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통계 사이트
재정패널조사(http://panel.kipf.re.kr)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종이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